



제418회 국회 (정기회)
제8차 환경노동위원회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국가 보호지역 정보의 구축·운영 근거 마련 〉

■ 김태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4209호)

2024. 11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국가 보호지역 정보의 구축·운영 근거 마련	2
※ 참고자료	5
1. 쿤밍-몬트리올 GBF(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) 주요내용	5
2. 국가보호지역 현황	6

I. 제안경위

2024년 9월 24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‘22.12)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, 육수 및 연안·해양 지역의 30%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·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‘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’를 채택하였으며,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.

우리나라도 환경부,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, ‘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’(‘16)에 따라 ‘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’를 구축하여 국내 보호지역 현황 정보 관리 및 대국민 제공 중이나 구축·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.

이에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,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(안 제11조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1. 국가 보호지역 정보의 구축·운영 근거 마련

개정안은 국가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·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11조(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·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·자연도, 생물종(生物種)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(이하 “자연환경정보망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략)	제11조(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(生物種)정보, 국가 보호지역 정보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법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·보급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태·자연도, 생물종(生物種)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음.

[자연 환경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현황]

시스템명	구축·운영 목적	구축·운영내용	법적 근거
에코뱅크 (국립생태원 운영)	국내·외 생물·생태정보 교류 확대 및 대국민 생태조사·연구자료 제공	전국자연환경조사, 생태·자연도, 생태통로 시설 정보 등	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
한반도의 생물다양성 (국립생물 자원관 운영)	생물다양성정보 통합적 관리·활용 확대를 위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	국가생물종목록, 국가가 지정·관리하는 생물(국가보호종, 환경부 지정관리종, 기후변화 생물지표종) 목록 등	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생물자원관법 제5조 ¹⁾

※ 출처: 환경부

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2022.12)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, 육수 및 연안·해양 지역의 30%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·관리되도록 하는 목표에 합의(쿤밍-몬트리올 GBF²⁾ 채택)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보호지역 관련 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

환경부는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 통합·공유를 통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 관리 및 보호지역 통계·현황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5

- 1) 「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사업)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생물자원의 수집·보존·관리·연구
 2. 유전자원, 천연물, 종자,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·배양 및 제공
 3.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·학술적인 조사·연구
 4. 생물자원의 보전·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·산업화 지원
 5.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·교육 프로그램의 개설·운영
 6.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·배포
 7.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·기술자료·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
 8.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·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
 9.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(確證標本) 소재 정보 구축
 10.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 11. 생물자원의 분류·명명 및 등록
 12.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- 2) 참고자료1. 쿤밍-몬트리올 GBF(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) 주요내용

개 부처(환경부, 해수부, 국토부, 산림청, 국가유산청) 소관 16개 법률 29개 유형의 국가 보호지역 정보(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)를 2017년부터 구축·운영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.

[국가 보호지역 등³⁾ 정보 구축 현황]

2008	2009	2013	2014	2015	2016	2017
42개소	344개소	382개소	504개소	574개소	1,499개소	1,744개소
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 ⁴⁾
2,071개소	3,392개소	3,437개소	3,439개소	64,394개소	65,558개소	1,731개소

※ 출처: 환경부

이에 개정안은 국가 보호지역 정보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,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
02)6788-5541

3) 환경부에 따르면, 보호지역 정보와 함께 자연공존지역(3개 유형)에 대한 정보도 동 시스템에서 구축·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임.

- 자연공존지역: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,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, 경우에 따라 문화적·영적·사회·경제적·기타 지역적으로 연관된 가치의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지-내 보전 성과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운영·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('18, CBD COP14)

4) 환경부에 따르면, 보호지역 산정방식 변경(산림보호구역은 필지별로 계산하다가 2024년부터는 보호구역 1개당 1개로만 계산)으로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개소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임.

※ 참고자료

1. 쿤밍-몬트리올 GBF(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) 주요내용

비전 (2050 Vision)	자연과 조화로운 삶(Living in harmony with nature)
목표 (2050 Goals) (4개)	A 생태계(면적, 연결성, 온전성) 증대,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,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B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, 보존·복구·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C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·비금전적 이익의 공정·공평한 공유 D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
실천목표 (2030 Targets) (23개)	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① 지구 모든 육지와 해양에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수립 보장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중요 지역의 손실을 30년까지 제로화 ② 훼손된 담수, 해양 및 육지 생태계의 최소 30% 복원·보장 ③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·해양 최소 30% 보호지역,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(OECM) 통해 관리 ④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, 야생종·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, 인간-야생동물 상호작용 효과적 관리 및 갈등 방지 ⑤ 야생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,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·매매·수확 보장 ⑥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을 최소 50% 감소시키고, 주요 종 및 지역 중심으로 침입외래종 영향 감소·제거를 위한 퇴치·조절 ⑦ 환경 유실 영양, 살생물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,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오염 감소 ⑧ 기후변화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, 자연기반해법 및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통해 저감·적응·회복에 기여하고, 저감·적응 노력의 생물다양성 악영향은 회피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⑨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보호, 모든 사람(특히 취약한 사람들)의 사회·경제·환경적 이익 보장, IPLC의 관습적 이용 보장 ⑩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산활동(농·수산·어업·임업 등) 지속성 유지 ⑪ 매체질 조절, 자연재해 보호 등 생태계 기능 서비스 복구·유지·증진 ⑫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녹지 및 수변공간 면적·질, 접근성 및 이익 증대 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·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치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법 ⑭ 생물다양성 가치를 모든 정부 및 경제 분야의 정책·규제·계획, 환경영향평가 등에 완전히 통합, 공공 및 사적 영역 활동 및 재정흐름에 동조 ⑮ 대기업,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을 평가·공개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⑯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한 소비·선택을 보장하고,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감소 ⑰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 수립·이행·강화 ⑱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'25년까지 규명, 5,000억 달러/년 절감 ⑲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매년 2,000억 달러 이상 동원, 개도국 금융 지원을 '25년까지 200억달러, '30년까지 300억달러 이상 지원 ⑳ GBF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, 기술이전 및 접근 강화, 과학기술협력 촉진 ㉑ 인식·교육·연구 등 통해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보장 ㉒ 여성, 소녀, 청소년, 장애인, IPLC 등의 공평한 접근, 대표성 및 참여 보장 ㉓ 여성, 소녀의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
이행/평가	GBF의 내용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반영하고, 지표 기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지구적 이행점검 체계 구축

2. 국가보호지역 현황(2023.12.31. 기준)

□ 육상보호지역(내륙) : 17.45%

○ $17,504.98\text{km}^2 / 100,284\text{km}^2(\text{육상 국토면적}) \times 100\% = 17.45\%$

※ $17,504.98\text{km}^2 = \text{육상보호지역 총계 } 28,348.47\text{km}^2 - \text{중복면적 } 10,843.49\text{km}^2$

□ 해양보호지역(연안 포함) : 1.81%

○ $7,951.75\text{km}^2 / 438,991\text{km}^2(\text{EEZ 포함 면적}) \times 100\% = 1.81\%$

※ $7,951.75\text{km}^2 = \text{해양보호지역 총계 } 12,648.86\text{km}^2 - \text{중복면적 } 4,697.11\text{km}^2$

구분	부처	유형		소관법률	전체 개소수 및 면적*(km ²)				
					개소	합계	육상	해양	
총 계					1,731	40,997.32	28,348.47	12,648.86	
보호 지역	환경부	자연 공원	국립공원	자연공원법	23	6,870.22	4,091.45	2,778.77	
			도립공원		29	1,007.97	593.95	414.02	
			군립공원		27	237.56	234.67	2.89	
		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	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	1	26.57	26.57	-	
		야생생물보호구역(지자체)			397	999.64	999.64	-	
		특정도서		도서생태계법	257	13.81	13.81	-	
		생태·경관 보전지역	자연환경보전법	9	243.90	243.90	-		
				생태·경관보전지역(시도)	23	37.55	37.55	-	
		습지보호지역		습지보전법	32	135.72	135.72	-	
		습지보호지역(시도)			6	2.14	2.14	-	
		수변구역(4대강)		4대강 수계법	4	1,189.23	1,189.23	-	
		상수원보호구역		수도법	294	1,151.78	1,151.78	-	
		특별대책지역		환경정책기본법	2	2,419.74	2,419.74	-	
		해양 수산부	습지보호지역(갯벌)		습지보전법	15	1,572.44	-	1,572.44
			습지보호지역(시도)			1	6.15	-	6.15
			해양 보호구 역	생태계	해양생태계법	16	266.76	-	266.76
	생물			2		93.67	-	93.67	
	경관			1		5.23	-	5.23	
	환경보전해역		해양환경관리법	4	1,882.05	982.58	899.47		
	수산자원보호구역		수산자원관리법	28	3,227.83	714.17	2,513.66		
	국토부		도시자연공원구역		공원녹지법	12	274.80	274.80	-
			자연환경보전지역		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	1	9,794.39	6,700.77	3,093.61
	국가 유산청	천연기념물		문화재보호법	395	1,192.20	231.76	960.44	
		천연보호구역			11	456.32	431.68	24.64	
		명승			131	226.71	209.60	17.11	
	산림청	백두대간보호지역		백두대간법	1	2,646.00	2,646.00	-	
		산림 보호 구역	산림유전자원	산림보호법	1	1,764.05	1,764.05	-	
			생활환경		1	0.14	0.14	-	
			경관		1	186.91	186.91	-	
			수원함양		1	2,913.12	2,913.12	-	
			재해방지		1	34.77	34.77	-	
자연공존지역 (OECM)	보전재산		-	2	1.30	1.30	-		
	하천구역(특별보전구역)		-	1	115.78	115.78	-		
	학술림		-	1	0.90	0.90	-		

※ 면적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GIS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로, 실제 고시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